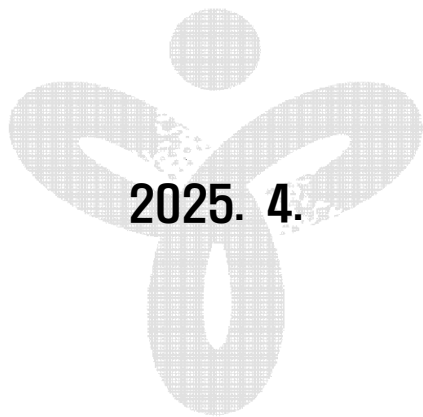


2025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교재

-중점 강조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중점 강조 사항

1. 관련 법령 개정 현황2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4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9
4. 시설 안전 관련 사항13
5. 공교육 정책 준수사항21
6. 기타 준수사항2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개정내용 1 (2023. 10. 19. 시행)
 -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중 폐원신고 및 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 통보 불가(제10조 제4항·제14조 제13항·제14조의2 제12항 신설)

□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개정내용 2 (2023. 10. 19. 시행)
 -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17조 제2항 제7호 신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정내용 (2023. 10. 19. 시행)
 - 원격교습학원으로 국제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원격교습학원의 외국인강사 자격요건 완화 (기존 대학졸업이상 학력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변경)
 - 원격교습학원(국제화교습과정)에서 채용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 기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격교습학원에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규제 완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개정내용(2023. 10. 19. 시행)
 - 원격교습학원(국제화교습과정)에서 채용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를国籍국 또는 거주국 자료로 제출 가능
 - 교습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중 탑승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중상해’의 범위를 제18조에 규정함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 개정내용 (2023. 4. 3. 시행)
 -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금액의 규정 중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
 - 시행일 이전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한 보험 만기일 이후에 1.5억원으로 인상하여 가입
 - 시행일 이후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으로 가입한 경우 배상금액을 1.5억원으로 반드시 변경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 개정내용 1 (2023. 6. 14. 시행)
 - 규칙 제21조 제2항에 행정처분시 감경 기준 마련
 - 등록말소(폐지) 및 정지 처분시 구체적인 감경조정 기준을 두 개 마련
- ※ 감경 조정 기준

-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 개정내용 2 (2023. 11. 9. 시행)
 - 교습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중 사고 시 탑승한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교습소 폐지 행정처분 신설
 - 연수교재 별첨 내용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여 확인
- 개정내용 3 (2025. 2. 20. 시행)
 - 폐원/폐소 미신고 시 폐원/폐소 신고 촉구 후 불이행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 신설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란?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학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9인승 이상, 자가용자동차 공동소유 및 전세버스 가능)

□ 통학버스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운영자	▶ 미신고 운행(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 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동승보호 자 포함)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신규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 · 정기교육: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확인증은 학원 시설 및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필수 비치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 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21.5.11.)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32호>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08.01.14.~	-
2	색상 <제19조 제8항>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물딩 제외)	'97.08.25.~	
3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앞 : 우측 상단(150mm*400mm) -뒤 : 중앙 하단(200mm*500mm) -1mm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97.08.25.~	
4	정지표시 장치 <제19조 제10항>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튜닝 : '14.2.21.~ 제작 : '15.1.1.~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5	좌석 <제25조 제2항>	-가로·세로 각각 27cm 이상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cm 이상 -좌석규격 : 가로 30cm, 세로41.4cm 이상 -등받이 : 71cm 이상(머리까지대 포함)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19.12.31.까 지 '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외부에서 접이식 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 어야 함	'97.08.25.~	
8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 장치 <제27조의2>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 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표시	'10.1.15.~	ISO FIX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1단 : 높이 30cm 이하, 가로·승강 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cm 이상 -2단 : 높이 20cm 이하(15인승 이 하는 25cm 이하)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11.08.31.이전 ·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시계 장치 <제50조 제2~3항>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17.01.09.~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 재(규칙 참고)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14.2.21 ~ 택1 설치 선택	'19.7. 1.~ 다 설치 
13	하차확인 장치 <제53조의4>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 · 표시등(비상등) 작동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 고음 등 작동 정지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 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충승합자 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시 60dB(A) 이상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14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 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요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 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 도, rpm 등) 확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	

□ 유상운송 관련

- 유상운송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불가. 다만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 받은 경우는 운행 가능** → **관할 구청**에 유상운송 허가 신청 (경찰서에 신청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별도로 신청)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차령은 11년**(만료 전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최대 차령은 13년**)

□ 사고사례

도	학 원 명	내 용
2022	○○유치원	■ 보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 22개월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걸어가다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한 통학버스에 부딪혀 사망
2022	○○어린이집	■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어린이집에 하차 후 출발과정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을 하지 못하고 어린이가 우측 뒤 범퍼부분에 끼여 수십미터 끌려가 중상 (당시 원생 4명, 동승보호자 탑승 상태)
2022	○○학원	■ 9세 학원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중 옷이 차문에 걸렸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채 출발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 (당시 동승보호자 미탑승 상태)

※ 운행 중 교통사고(사망,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학원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 처분이므로 반드시 법규 준수와 난폭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

□ 학원계 성폭력 피해 사례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고,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이 다니지 않게 되자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같은 것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00고법 형사 1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하였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자매 성폭행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2023. 4. 7. 박주영 기자

- 학원 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보호 필요성 증가
 - 학원계 종사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성 인권 존중

□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구 분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내 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점검 및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모두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대상 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교습소
취업 제한 기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름

□ 주요 과태료 항목

용	구 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	300	3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300	400	500
「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0	500	500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및 회신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가능
 - 학원장, 교습자는 모든 직원 채용 시(특강 강사, 행정직원, 아르바이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및 회신서”와 관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 가능**(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및 유지 의무
- 학원·교습소의 운영자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이 용이하도록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일자, 실시인원,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일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현황 등 관리 자료 예시

연번	연도별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일자	성범죄경력 조회인원	성범죄경력 조회회신일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경찰서명	업 무 담당자명
1	2023	2023. 3. 1.	4명	2023. 3. 10.	○○경찰서	홍길동
2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제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신고의무교육 실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평생교육기관장·학원장·교습자)은 소속 신고의무자(강사·직원 등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18.4.25.시행)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자체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시설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교육 미이행시 제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교육결과 제출) 2025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 후,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에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4 시설 안전 관련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내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2021. 1. 26.제정] 시행(2022. 1. 27.)

■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중대재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원료,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공공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학원 (바닥면적과 무관)	다중이용업소에 속한 학원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 ※ 하나의 건축물에 설립자가 같은 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인 학원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1,000㎡ 이상인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명 미만인 경우
기 준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要)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환자 1년 이내 3명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질병	이상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학원 등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산업재해)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제5조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학원업은 전담조직 설치업종 아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보건관리책임자(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반기 1회 이상)
	⑥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학원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업종이 아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반기 1회 이상 점검)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 보고(반기 1회 이상),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반기 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시 필요한 조치(이행 지시, 예산 확보)

○ (중대시민재해)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1조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수행
	②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④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⑤ ① ~④ 이행점검(반기 1회 이상)
	⑥ ⑤ 결과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등)
	⑦ 재해 발생 등에 대비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사항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개선사항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상자 긴급구조조치, 시설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
	⑧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 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 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법인 또는 기관 양벌규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중대산업재해: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 화재 등 시설 안전 관리

어젯(24일)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어두컴컴한 건물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진입합니다. 교실 책걸상은 널브러졌고, 벽지는 까맣게 그을린 채 마구 찢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건물 5층 한 학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건물에 있던 학생 등 77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교실 안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서울 대치동 학원 건물서 불...학생 등 77명 대피 소동 2022. 6. 25.

- 최근 발발한 대형 화재 사건으로 시설 안전 관리 필요성 증가
- 국가안전대진단 캠페인 연계
 - 학원 등 운영자의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등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의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심층 진단 및 주요 안전대책 이행실태 중점 점검 실시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학원 등의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내용, 시기, 방법〉

	내 용
안전교육 내용	■ 안전사고 예방 가. 위험성이 있는 시설 및 장비 등 안내 나. 안전한 입장·퇴장 및 안전시설 이용방법 ■ 비상시(화재 등) 피난 요령 다. 비상구 위치 및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라. 대피장비(완강기 등) 사용법, 안전한 피난 방법 ■ 비상시(화재 등) 대처요령 마. 비상시 응대요령(119 신고 등) 바.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사. 응급처치장비(AED 등)위치 및 사용법 아.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심폐소생술 등) 자.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행동 수칙
안전교육 시기	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개시) 전까지 실시 나. 동일한 이용자가 계속 이용 시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교육 실시
안전교육 방법	■ 다음 방법들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한다. 가. 안내문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배포 나. 안내도 형태로 제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다. 영상장비를 갖춘 시설의 경우 영상물로 제작하여 상영 라. 방송자이를 갖춘 시설의 경우 안내방송 마.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가 직접 시연을 통해 안전교육 실시

○ 시설 관리 중점 사항

- 노후 건물 안전 진단 실시 및 각종 전기, 가스시설, 배수로, 맨홀, 정화조관리
- 계단(난간) 및 엘리베이터 시설 점검
- 시설 및 유리창 등 안전 여부와 건물 옥상 관리
- 석면 관련 건축재 안전 관리
- 창문에 설치한 방범용 쇠창살 제거 및 비상구 폐쇄 금지
- 시설의 내부마감재, 칸막이 등은 불연재 사용
- 학원(독서실)의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협소한 통로 및 미로 형태 구조 금지
- 안전관련 보험 가입 의무 이행(영업배상보험, 가스배상보험, 화재보험 등)
- 난방시설, 전열기, 가스시설 정비 및 점검(이동식 난방기 사용 제한)
- 소화기 충약 상태 확인 및 교체
-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될 경우 화재·폭발사고 대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9조의2)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절차

○ 대상 시설

-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
-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 수용인원 산정방법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

○ 전기안전점검 접수(학원에서 직접 신청)

- 가. 신청 시기: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해당 지사)에 신청
- 나. 구비 서류
-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 1부
- 다.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www.kesco.or.kr)

- 옥상이나 계단에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및 줄사다리 등 설치
- ※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완강기 사용법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강사·학생 등에게 교육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각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 강 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 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 인 경우 해당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경우 해당

□ 안전점검표 활용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조직도→평생교육과→부서업무방→목록번호 140번에 탑재된 “학원·교습소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 유아대상 학원의 안전관리

- 유아대상 학원 시설 안전
 - 고층 위치 유아대상 학원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므로 저층으로 이전 권장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대상 학원·교습소는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주기적인 유지·보수 관리, 안전점검과 진단, 안전교육 이수 실시

의무	내 용	적용시기	위반시 벌칙, 과태료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후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하고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내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 실시(일일점검 실시 권장)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월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150/200/300만원)
안전진단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신청	놀이시설 이용 금지 후 1개월 이내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250/350/500만원)
안전교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함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150/200/300만원)
보험가입	사망 시 8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하면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250/350/500만원)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150/200/300만원)
중대사고 발생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교육 지원청에 통보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사고발생한 때 즉시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250/350/500만원)
보고·검사 답변	교육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요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1회/2회/3회이상) (100/150/200만원)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표시	

-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
 - 대상: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대상 학원
 - 주기: 연 1~2회
 - 내용: 화재 대피 훈련 및 대피유도 교육훈련 실시 후, 훈련 이행 여부 제출

■ 안전점검표 및 사고발생통지서

학원(교습소) 안전점검표

- 학원(교습소)명:
- 점검일자:
- 점 검 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세부내용 (위치, 상태 등)”
	예	아니오		
① 시설 안전				
• 창문은 열고 닫는데 힘들지 않나요?	☐	☐	☐	
• 내·외부 및 천장 마감재는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은 없나요?	☐	☐	☐	
• 건물 주변 지반침하 또는 웅덩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	☐	☐	
• 옥외 간판은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나요?	☐	☐	☐	
• 계단은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나요?	☐	☐	☐	
② 전기 안전				
•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적 정기검사(점검)를 받았나요?	☐	☐	☐	
• 전원 차단형(스위치)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나요?	☐	☐	☐	
• 분전반, 콘센트, 전기제품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은 없나요?	☐	☐	☐	
• 누전차단기 앞쪽의 황색 또는 적색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내려가나요?	☐	☐	☐	
• 전선, 플러그, 콘센트의 외부에 손상된 부분은 없나요?	☐	☐	☐	
• 분전반은 잠금장치로 잠가져 있나요?	☐	☐	☐	
•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의 콘센트는 방수 덮개를 사용하고, 미사용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 두었나요?	☐	☐	☐	
• 퇴근할 때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있나요?	☐	☐	☐	
• 비인가 전열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나요?	☐	☐	☐	
③ 가스 안전				
• 가스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점검)를 받았나요?	☐	☐	☐	
• 가스렌지 등 연소기 사용전·후 충분히 환기를 하셨나요?	☐	☐	☐	
• 배관 이용부에 비눗물을 발랐을 때 거품이 나는지 확인했나요?	☐	☐	☐	
• 가스기구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배관 끝 부분을 금속 플러그로 막음해 놓았나요?	☐	☐	☐	
• 배기통은 이탈되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고 내열 실리콘으로 틈이 없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요?	☐	☐	☐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고 열고 닫는 버튼으로 밸브 차단기가 작동 하나요? ※ 배관 끝에 퓨즈콕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안전장치가 설치된 가스기구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	☐	☐	☐	
④ 소방 안전				
• 소화기의 압력(눈금)이 초록색에 위치)은 적절한가요?	☐	☐	☐	
•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는 초과하지 않았나요?	☐	☐	☐	
• 피난유도선은 알아보기 쉽게 설치되어 있나요?	☐	☐	☐	
• 유도등, 유도표시 또는 비상조명등은 항상 불이 켜져 있나요?	☐	☐	☐	
•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정상 작동하나요?	☐	☐	☐	
• 비상구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열리며,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지 않나요?	☐	☐	☐	
• 화재시 자동문을 열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나요?	☐	☐	☐	
⑤ 보건·위생 안전				
• 매년 공기 질을 측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 청소, 환기를 자주하고 있나요?	☐	☐	☐	
•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수시로 살균, 소독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즉시 폐기하고 있나요?	☐	☐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비치하였나요?	☐	☐	☐	
⑥ 업종별 특성 안전				
• 화장실 안에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었나요?	☐	☐	☐	
• 강의실의 조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x 이상인가요?	☐	☐	☐	

(교습소) 사고발생통지서

■ 학원·교습소 현황

학원(교습소)	학원(교습소) (전화: , FAX:)				
주소: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 사고 현황

사고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고장소					
사고원인					
사고 개요	인명피해	대피 인원		피해 인원	
		학생: 명, 직원: 명		학생: 명, 직원: 명	
	재산피해	피해내역		추정손해액	원
	사고내용	(육하원칙으로 작성)			

■ 사고자 현황(학생)

이름	성별	학교명	학년/반	비고

■ 사고자 현황(직원)

이름	성별	소속	비고

■ 사고발생 후 조치 내용

■ 기타사항

20 년 월 일 학원장(교습자) (서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학원장(교습자)은 사고 발생 조치 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결과 보고

5

공교육 정책 준수사항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및 자유학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사교육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광고·선전 금지

□ 상급학교 진학 성과 현수막 게시 및 전단 배포 등 제한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제11조(지도·감독 등) ④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할 경우, 학별 우선 문화를 조장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

□ 학원, 교습소 건물 외부 교습비등 게시

-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교습비 안정을 위하여 외부 게시제 시행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 목록 게시
-시설 내부에도 게시하고, 출입문 주변·복도·외벽 등에도 교습비를 게시

분	학원·교습소	
	시설 내부	시설 외부
1층 주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학원·교습소(가형)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가형” 외 장소에 위치한 학원·교습소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	① 건물 <u>주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u>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②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u>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u>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①, ②번 방법 중 선택

○ 미이행 시 행정처분 사항

사항	위반 사항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거짓 표시·거짓 게시)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위반 횟수	1	2차	3차	1차	2차	3차
벌점(점)	10	20	30	5	10	15
과태료(원)	5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없 음		

☐ 교습소 임시교습자, 보조요원 채용

- 임시교습자: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채용

✓ 교습자가 출산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교습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 보조요원: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채용

✓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학습자 등·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제8조 관련)

년 월 일 현재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반당)	월교습시간 (분)	월교습비 (원)	교습 기간 (○월)	기타경비	
						구분	금액(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 주: 1.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모든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
 3. 게시는 학원·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4. 기타경비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학원 내 체벌 금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보호법 >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학원에서는 학과교습과 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폭력에 대한 자제심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또한 폭력의 결과에 따라 형사상 및 민사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주어 내적 자제심과 외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학원은 학생 지도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사용 불가
 - 강사가 교습시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고, 학생을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여도, **폭력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형사상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체벌 발생 시
 - 해당 학원은 생활지도 불철저(고의·중대·중과실) 또는 운영 부조리(고의·중과실)로 별점 부과
 - 학원 강사 또는 보조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고발 조치

□ 학교 시험 문제 저작권 관련

- 학교 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안내 사항(2020. 7. 30.)

“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 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최근 OO승무원학원 소속 수강생 프로필이 취업알선 업체에 유출되거나 △△입시컨설팅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홍보에 활용되는 등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안 다수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 요망
- 개인정보 처리 요령
 - 학습자 또는 강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원·교습소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반드시 필요

- 별도의 동의 없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습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 정지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학원·교습소는 전부 및 일부를 처리 정지하여야 함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 학습자강사 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요구(홍보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필요)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와 민감정보 수집 불가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별도 동의 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 개인정보가 보관된 pc는 비밀번호 설정, 백신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 법령 근거 확인 또는 정보주체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공

- 강사 및 학습자 개인정보는 법령근거 또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제공
- * 미성년인 학습자의 학습내용 등은 친권자에게 제공가능

◆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 공개, 운영방침 수립공개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등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시

◆ 학습자 퇴원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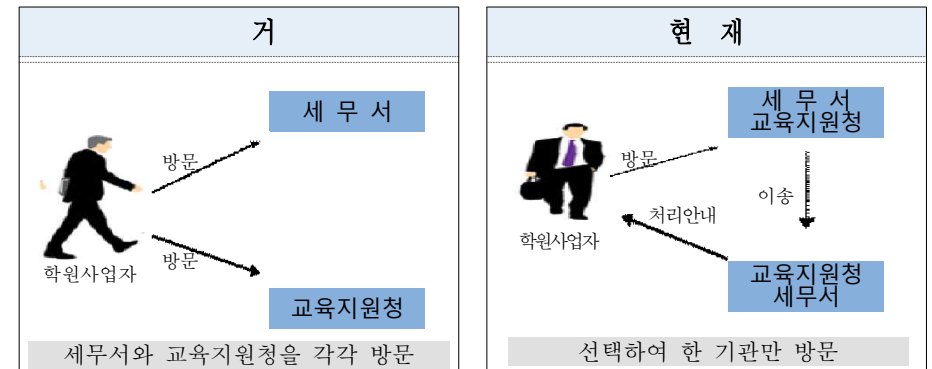
- 학습자 퇴원 시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다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집목적·이용기간·이용항목 등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 수집·이용

□ 사업자 폐업(원) 절차 간소화

- 대상: 폐업(원)신고를 하고자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원)신고서와 교육지원청에 폐업(소)통보서·개인과외교습자 교습철회 통보서의 제출을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인
- 운영기준
 - (관할 세무서)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 등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송
 -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송
- ※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사항 직권 말소 가능
- 이용방법: 학원 등 사업자가 교육청과 세무서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폐업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청 인	구 비 서 류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위임장



□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목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원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 위원정수: 15~20인(교육지원청별 위촉, 2년 이상 임기제)
- 위원 의무
 - 공정하고 청렴한 학원자율정화활동 수행
 - 학원 운영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사익 추구 금지
- 주요 활동
 - 학원 등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실시
 - 자율정화활동 중 인지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점검 요청
-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학원 지도·감독권, 행정처분권이 부여될 수 없음
- ※ 계시 및 일반사항 위주로 활동, 세부 증빙자료 요구와 행정처분 불가
- 연수 및 공교육 정책 홍보
- 그 밖에 학원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제출

□ 결격사유의 예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9조(결격사유 등)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 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 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 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개정 2018. 6. 12.>

- 학원의 설립·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학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학원 설립 등 록이 실효되어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주기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 관리 실시

□ 긴급복지 신고의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제3항)
 - 6.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10.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기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 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 여 실질적인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 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교육자료 (동영상, ppt 형태)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전국민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복지부 직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교원, 교육 전문직

-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후 각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안내한 내용에 따라 제출

2025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교재

-주요 운영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운영 사항

I. 법령	6
II. 교습비	6
III. 주요 운영 사항	11
IV. 주요 지도감독 사항	23
V. 기타 착안 사항	32
1. 학원·교습소 설립(변경)시 구비 서류	
2. 행정처분 기준	
3. 위반사항 벌점표	
4. 과태료 부과기준	
5. 교습비등 표시 기준	
6. 학원강사·교습자 자격기준	
7. 학원 교습과정	
8. 점검 체크리스트	

□ 학원 및 교습소 등록·신고 주요 사항 □

▶ 학원설립·운영 등록

- ▶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처리기한: 8일
- ▶ 처리과정



▶ 설립 전 확인사항

확인사항	내용	o	x
1. 설립자의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신청인 등록기준지 확인)		
2.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1. 학원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용도인가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반건물은 아닌가		
	3. 유해업소는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4.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가? 그렇다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5. 학원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가?(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불허용도 확인)		
3. 임대차계약서	1.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였는지		
	2.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자가 동일한지		
4. 학원시설	1. 최소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였는지		
	2.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3.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는지		
	4.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하였는지		
	5. 공사가 완료되고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학원의 명칭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였는지(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상표 등록 여부 확인)		
6. 최종점검	아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유 의 사 항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 건물 무상사용승낙서 제출
2. 학원원칙(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3. 학원 시설평면도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4.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5.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구청·인터넷(정부24) 발급) - 일반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 건물소유주가 2명 이상이라면 공유자의 과반수 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 결정함. 따라서 건물소유자 소유지분이 1/20이라면 2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함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대상 교육지원청 사전 문의)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알아올 것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음)
8.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 법인 (추가 제출서류)	- 임원(전부) 등록기준지 알아올 것
9.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을 받아야 함: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참조)]	※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임원(전부)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동의서 지참할 것
11.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원본 지참 ,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 교습소 신고 안내

- ▶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처리기간: 8일
- ▶ 처리과정



▶ 설립 전 확인사항

확인사항	내용	o	x
1. 교습자의 자격	1.교습자 자격을 갖추었는가(학원 강사 자격기준 준용)		
	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3.타지역에 이중 신고되어 있지 않는가		
2.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1.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용도인가		
	2.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반건물은 아닌가		
	3.유해업소는 없는가?		
3. 임대차계약서	1.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계약하였는지		
	2.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자가 동일인인지		
4. 교습소 시설	1.시설·설비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2.공사가 완료되고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5. 교습소 명칭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였는지(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상표 등록 여부 확인)		
6. 최종점검	아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 교습소의 과목: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하여야 함

🔍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동시에 교습하려면 어떤 교습소를 설립해야 하나요?
 📌 음악교습소에서는 악기를 교습할 수 있으므로, 음악교습소를 설립·운영하시면 됩니다.

- ▶ 교습소에서 교습하는 교과목은 학교교과목으로 제한되지 않음
- ▶ 교습소의 학습자 수 등: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여야 함

▶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 강의실 18㎡의 일시수용인원은 얼마인가요?
 📌 1㎡당 0.3인 이하이므로, 18㎡×0.3인 = 5.4인 이하이므로 5명임. (소수점은 절사)

▶ 교습소의 명칭

- ▶ 형식: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금지
- ▶ 명칭 표기 방법은 학원의 표기 방법과 동일(학원 명칭 등록 참고)

▶ 교습소 설립 신고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유 의 사 항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 건물 무상사용승낙서 제출
2.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구청·인터넷(정부24) 발급) - 일반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 교습소 교습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차 계약할 것 대
3. 교습소 시설평면도	- 건물소유주가 2명 이상이라면 공유자의 과반수 의 동의가 있어야 함
4.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 결정함. 따라서 건물소유자 소유지분이 1/2이라면 2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함
5.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등)	
6. 사진 2매(반명합판, 3×4cm)	
7.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I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이하 “교육규칙”이라 함)

II 교습비

-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5조(교습비등)
-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 교육규칙 제8조(교습비등 게시·표시)

1. 교습비 등록

- 가. 시기
- (1) 최초 학원 등록 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 (2) 변경 등록 시: 교습비 변경 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등록
 - (3) 유의사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교습비를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나. 제출서류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신규),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2) 수업시간표(실제 시행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표) 등 기타 증빙 자료(교습비 등 내역서)

다. 주의사항

- (1) 기타비용(차량비, 재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2) 학원법에 규정된 교습비등 외에 다른 비용 징수 금지(예: 레벨테스트 비용 징수 금지)

2. 교습비등 게시

- 가. 교습비등 게시는 학원설립·운영자가 등록한 금액으로 하되 교습비가 조정된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등록한 후 게시함.
나. 게시 장소는 학원 내·외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게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 별점 및 과태료 부과

- 「학원 외부 교습비등 표시제」가 시행되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교습비등을 게시하여야 함. 외부에 게시할 때에는,
- ①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 ②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 ☞ ①, ②중 택일하여 교습비 목록을 게시하여야 함.

- (1) 학원에서 임의로 교습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계속 받는 경우도 별점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교습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교습비도 변경해야 함.
- (2)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반환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학부모가 요구 시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 (3)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별점 및 과태료 대상임.

다. 행정처분

- (1) 행정처분: 교습비등 미게시로 별점 10점 부과(반복 적발 시 누적 별점)
- (2) 과태료: 교습비등 미게시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50만원~200만원)

3. 교습비등 표시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해야 함.

나. 표시방법: 교습비등은 수강생 및 학부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내용 표기

다. 행정조치

- (1) 행정처분: 교습비 미표시로 별점 10점 부과(반복 적발 시 누적 별점)
- (2) 과태료: 교습비 미표시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50만원~200만원)

4. 교습비등 징수

가. 교습비 징수

- (1)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여 수리된 금액을 징수해야함.

※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등 징수 불가!

- (2) 교습비를 징수할 때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부를 보관
 (3) 여러 과목을 통합하여 징수할 경우 상세 내역 표기
 (4)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변경한 교습비를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나. 교습비등 반환기준 표시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4] 개정 2020. 3. 31.)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괄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 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괄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 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라. 할인된 교습비등 반환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을 기준으로 ‘교습비등 반환기준’ 에 따라 반환

마. 할인되기 전의 교습비등이 기준이 아닌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

예) 매일 1시간씩 교습하고 월 10만원인 교습과정을 2023. 3. 1. ~ 2023. 5. 31.(3개월) 수강등록하고 교습비를 할인받아 3개월분 수강료 27만원 납부한 후 2023. 4. 20.부터 수업을 중지한 경우

▶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기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체 수강 기간 92일중[2023. 3. 1. ~ 2023. 5. 31.] 42일[2023. 4. 20. ~ 2023. 5. 31.]을 미수강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 27만원의 42/92인 123,260원을 반환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2023. 3. 1. ~ 2023. 3. 31.: 1개월차
⇒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23. 4. 1. ~ 2023. 4. 30.: 2개월차(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 19일(2023. 4. 1. ~ 2023. 4. 19.) 동안 19시간 수강하여, 2개월차 총교습시간인 30시간(30일 동안 매일 1시간)의 1/2 경과후이므로, 반환 금액 없음
※ 학습장소는 납부한 교습비 - (1일교습비 × 사용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
- 2023. 5. 1. ~ 2023. 5. 31.: 3개월차
⇒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 반환

■ **총 반환금액: 9만원**

- 교육부 작성 교습비등 반환기준 회신

▶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하는 경우,

-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바. 교습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 최초 수강일부터 연장된 교습기간의 말일까지 **수강 중단을 제외한 기간을 전체 교습기간(수강기간)으로 보고**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 산출

예) 매일 1시간씩 교습하고 월 10만원인 교습과정을 2023. 3. 1. ~ 2023. 5. 31.(3개월) 수강등록하고 교습비를 할인받아 3개월분 수강료 27만원 납부한 후 2023. 4. 1. ~ 2023. 4. 13.(13일) 수강 중단하고 교습기간을 13일(2023. 6. 13.까지) 연장하였으나 2023. 4. 20.부터 수업을 중지한 경우

▶ **등록말소, 폐지, 교습정지, 기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체 수강 기간 92일중[2023. 3. 1. ~ 2023. 3. 31.(31일) 및 2023. 4. 14. ~ 2023. 6. 13.(61일)] 55일[2023. 4. 20. ~ 2023. 6. 13.]을 미수강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 27만원의 55/92인 161,413원을 반환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2023. 3. 1. ~ 2023. 3. 31.: 1개월차
⇒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 2023. 4. 14. ~ 2023. 5. 13.: 2개월차(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 6일(2023. 4. 14. ~ 2023. 4. 19.) 동안 6시간 수강하여, 2개월차 총교습시간인 30시간(30일 동안 매일 1시간)의 1/3 경과전이므로,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의 2/3 인 6만원 반환
※ 학습장소는 납부한 교습비 - (1일교습비 × 사용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
- 2023. 5. 14. ~ 2023. 6. 13.: 3개월차
⇒ 납부한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 해당액 9만원 반환

■ **총 반환금액: 15만원**

사. 기타경비의 종류

- (1)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2)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용
- (3)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4)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5)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6)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III

주요 운영 사항

1. 학원·교습소의 책무(학원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조례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교육규칙 제2조(보험 등의 가입)

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기준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의무 가입

나. 배상기준금액

시설	실비보험	배상금액 기준		가입유형·시기	
	인당	1인당	1사고당	유 형	시 기
학원	3천만원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부터 14일 이내
교습소			5억원 이상	휴원(소)의 경우	재개원(소)일부터 7일 이내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가 입 처				일반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	

다.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제출
라. 배상금액기준은 최소 금액이므로 초과하여 가입 가능

마.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해야 함

바. 미가입 및 기준 미달 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등록말소 (폐지)
	기준미달	20	40	60

위반행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 명칭 변경

-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표시)
- 시행령 제7조 제2항(등록사항의 변경)
- 교육규칙 제4조(학원의 명칭)

가. 시 기: 명칭변경 즉시

나. 방 법: 변경통보서 제출

다. 학원명칭: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 학원 순으로 표기

라. 교습소명칭: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으로 표기

마.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등록된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바. 유치원 명칭으로 학원 운영 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이 “오늘학원”이면, “오늘학원”(○), “오늘아카데미”(×)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검색방법: <http://www.kipris.or.kr>⇒
[상표] ⇒ 명칭 검색)

※ 유치원의 ‘외국어’ 및 ‘한글식 표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음.

※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069, 2016. 10. 19.)

구분	유치원		학원	
	외국어	한글식 표기	외국어	한글식표기
한자	幼稚園	유치원	學院	학원
영어	kindergarten(Am)	킨더가튼	educational institute	에듀케이션얼 인스티튜트
	preschool(Brit)	프리스쿨		
	nursery school	널서리스쿨		
	kids school	키즈스쿨		
독일어	kinderschule	킨더슐레	konservatorium	콘서바토리움
프랑스어	' ecole maternelle	에콜 마테호넬	institut	어스티튜
중국어	幼稚園	유치유안	学院	세이유안
일본어	ようちえん	요우치엔	がく-いん	가꾸잉

사.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을 사용해야 하며, 영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병기하여야 합니다. (study학원, Yale Academy학원 표기 불가)

3. 설립·운영자 변경

-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가. 시 기: 설립·운영자 변경과 동시에 신청

나. 방 법: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다.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교습소)등록증, (법인일 경우)등기 사항증명서, 인수·인계확인서(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유의사항

- (1) 상속으로 인한 설립·운영자 변경은 인감증명서 대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2)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2인 이상 소유주 날인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각 소유주들의 지분 합이 1/2을 초과해야 함,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원의 등록된 시설·설비 사항이

동일한지 확인 후 수리

- 변경 등록 신청 시에 당초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설립·운영자변경은 당초 설립자와 변경되는 설립자 2인이 입회 후 등록 권장

(4)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은 변경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등록 실시

- 변경등록을 하여 등록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설립자변경 완료

4. 강사

-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시행령 제12조(강사),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조례 제10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 교육규칙 제7조(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 통보)

가. 강사 채용 등록

(1) 등록시기: 최초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에 신청하며, 운영 중에 강사를 채용하였다면 강사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미등록 시 벌점 부과)

(2) 구비서류: 학원변경통보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채용통보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가) 내국인강사

- 졸업증명서(원본 제출), 졸업장 사본(원본 지참), 자격증(원본지참) 중 택일

(나) 외국인강사(아래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검증 후 채용 완료)

- ①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고,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다만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E-2 비자) 받은 사람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및 명칭 ◆

- ▶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조회서, 주정부(state) 범죄경력조회 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 ▶ 캐나다: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 ▶ 영국: Home Office, Police(Criminal Record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 ▶ 호주: AFP(Australian Federal Police)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 ▶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 ▶ 아일랜드: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 ▶ 뉴질랜드: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조회서

※ 위의 문서를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해당 국가 내 우리나라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

※ 위 기관 외 기타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인정 불가

②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함. 다만 외국인 강사가 외국 체류 중이고 외국어 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 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함.

※ 법무부 고시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HIV가 제외되었음

③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

④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해야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자격별 취업활동 범위(학원관련)

체류자격	체류자격 설명	학원 취업활동 범위
D-2(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학원강사 가능
E-2(회화지도)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외국어 교습 담당 강사
E-6(예술흥행)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모델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① 학원 강사 ② 학원(교습소) 설립 가능 (취업 범위에 창업 포함) ③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가능
F-2(거주)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부여	
F-4(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F-5(영주)	활동제한 없음	
F-6(결혼이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자세한 사항 및 비자별 자격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참조

(3) 원장이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 채용등록 필수**

(4)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유의사항

- (가)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대상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 대상기관의 장은 강사뿐 아니라 **직원(행정, 운전 등) 채용 시에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성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범죄 경력자인 경우 해임을 요구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에 불응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폐쇄 조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대상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 대상기관의 장은 강사뿐 아니라 **직원(행정, 운전 등) 채용 시에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인 경우 해임을 요구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이에 불응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폐쇄 요구(「아동복지법」 제29조의5, 제75조)

(다) 외국인강사에 대한 연수

- **대한민국 입국 후** 문화 및 전통을 알려 생활 적응을 위한 **연수를 1회 이상 실시**

(라)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한 제한

-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해서는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에 해당하므로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및 학원에 해임 요구**
- 외국소재 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 검증 엄중 요망

(마) 학원 강사 채용·해임 등록은 향후 해당 강사가 교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을 산정하는 중요 근거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신고 필요

(바) 강사 채용 등록 방법

- 교육지원청 직접 방문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외국인강사 제외)

나. 강사 해임 통보

- (1) 통보시기: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미통보 시 별점 부과)
- (2) 제출서류: 해임 통보서
- (3) 해임 통보 방법: 교육지원청 직접 방문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다. 강사 인적사항 게시

- (1) 게시 의무: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2) 게시의무 위반 시 벌칙: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의 경우 별점 및 과태료 부과
- (3)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인적사항도 게시
 - 생활지도 담당인력은 강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강사 인적사항 게시에

준하여 인적사항을 게시

라. 무자격 강사 등 채용 금지(임시 강사 및 보조 강사도 해당)

- (1) 학력 및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채용 금지
- (2) 위반 시 무자격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

5. 교습자의 자격 및 보조요원

○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가. 교습자의 자격

- (1)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 (2) 교습자 역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여부 등을 조회

나. 임시교습자 채용: 교습자가 질병·출산 등으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다. 보조요원

- (1) 교습소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 (2) 보조요원의 자격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누구나 가능함
- (3)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할 수 없음**

라.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등 채용 시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필수(학원 강사와 동일)

6. 시설

-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8조(시설기준)
-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 조례 제3조(학원시설),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가. 위치 변경(신규설립과 유사하므로 교육지원청과의 사전 협의 필요)

- (1) 정의: 학원의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동일 건물 내에서 기 등록된 학원의 층 또는 호실을 변경(추가, 감소)하여 면적을 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
- (2) 신고기한: 즉시 ⇒ 무단 위치 변경 시 별점 부과
- (3) 구비서류: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시설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4) 유형

- (가) 장소 변경: 학원 운영 중 장소 변경 시, **변경할 장소에 시설을 완성한 후** 교육지원청에 등록(★시공 전 사전 협의 필수)
- (나) 시설의 확장 및 축소: 동일 건물 내에서 이미 등록된 학원의 층 또는 호실을 변경(추가, 감소)함으로써 면적만 변경(확대 또는 축소)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
- (다) 학원 시설의 확장·축소 등의 경우에도, 강의실(실습실)의 면적은 **학원이 확보해야 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함.

나. 시설·설비 변경

- (1) 신고기한: 즉시 ⇒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시 벌점 부과
- (2) 구비서류: 학원변경등록신청서,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 (3) 유 형
 - 등록된 시설 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등록당시 강의실 기준 면적 확보)
 - 시설 무단 변경으로 인해 강의실 총면적이 등록 당시 강의실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우 벌점(25점) 부과

7. 휴폐원(소) 신고

-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시행규칙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가. 휴원(소) 신고

- (1) 시기: 휴원(소) 즉시
- (2) 방법: 휴원(소)신고서 제출
- (3) 유형
 -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1월 이상 휴원(소): 벌점 부과 및 휴원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학원의 경우)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2월 이상 무단 휴원 또는 2월 이상 무단 미개원한 경우→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개원촉구를 하였는데도 개원하지 않을 때는 등록말소 및 휴원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 폐원(소) 신고

- (1) 시기: 폐원(소) 즉시

-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폐소)한 경우→개원(개소)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 방법: 폐원(소)신고서 제출

- (3) 무단폐원(소)의 정의: 시설·설비를 철거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권을 상실하는 등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조사 후속 실시)

다. 절차 간소화 (시행규칙 제8조)

- 휴·폐원(소) 신고 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모두 방문하지 않고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처리가 가능함.

라. 등록사항 직권 말소(법률 제10조)

- 휴·폐원(소) 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

8. 서류 관리

- 법률 제13조(강사 등), 제15조(교습비등)
- 시행규칙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가. 비치 장부(서류) 및 보존기간

- 게시사항: 등록증, 교습비등 게시표 및 반환기준, 강사 게시표

장 부 명	보존 기간	장 부 명	보존 기간
학원원칙	준영구	수강생대장	3년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명서	준영구	직원 명부	계속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나. 서류 관련 지도·감독 사항

- (1) 등록증명서 미게시: 등록증명서를 시설 내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분실한 경우도 해당 ⇒ 분실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재발급 신청
- (2) 제장부 미비치
 -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명부 등을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3) 장부 부실 기재
 - 장부는 비치하였지만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작성한 경우

다. 참고사항

- 현금출납부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로 대체
-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영수증 증빙 가능(학습자명, 교습 과목, 교습기간 명시)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권장하는 간편 장부 사용 가능

9. 기타 운영 관련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등 안전관리

- (1) 어린이통학버스: 13세 미만 대상으로 9인승 이상 학원장 소유(공동소유 포함) 자가용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유상으로 운송 가능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 가능하도록 학원장 소유 차량(전세버스 포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 (2) 유상운송 허가: 전세버스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경우, 관할 자치구청에 방문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할 경찰서로 운영 신고 (「도로교통법」 제52조)
- (4) 동승보호자 탑승: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동승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시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 지도
 - 운행 중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 착용 등 조치 실시
- (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조치(「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벨트를 착용 후 출발
 - 어린이가 하차할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하차 확인 시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를 작동하여야 함
-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또는 동승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교육: 운전자, 운전자 또는 동승자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행정기관: **국토교통부**(유상운송 허가), **경찰청**(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도로교통공단**(안전교육)

「교통안전법」 개정사항(시행 21.1.1.)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제3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시행 21.1.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 교습소 추가(제2조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 근거 마련(제53조의4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시 제재를 강화(제154조, 제160조제1항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제53조제6항, 제154조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 의무 신설(제53조의5)

나. 학생폭력 예방 철저

- (1) 생활지도 철저히 학원 내 폭력 근절
- (2) 불량 서클조직 색출 등 지속적인 지도
- (3) 등하원 시간 학부모와 연락체계 유지
- (4) 학원 내 폭력에 대한 취약구역 순찰 강화
- (5) 체벌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학부모 동의 무관)

다. 시설 안전 철저

- (1) 노후 건물 안전진단 실시 및 각종 전기, 가스, 배수로, 맨홀, 정화조 등 관리
- (2) 계단(난간) 및 완강기, 엘리베이터 주기적 점검
- (3) 유리창(방범용 쇠창살 제거), 비상구(폐쇄 금지), 건축재(석면 사용 금지), 마감재·칸막이(불연재 사용) 등 건물 관리 철저
- (4) 강의실 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협소한 통로 및 미로 형태 구조 지양
- (5) 안전 보험 필수 가입(영업배상보험, 가스배상보험, 화재보험 등)

라. 화재예방 철저

- (1) 난방시설·전열기·가스시설 정비 및 점검(이동식 난방기 사용 제한)
- (2) 소화기 충약 상태 등 화재 대비
- (3)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4) 옥상이나 창가에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및 줄사다리 등 설치
- (5) 관할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완강기 사용법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강사학생

등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마.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

- (1) 개인정보 수집 시 당해 학습자(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2)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한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
- (4)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보관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

바. 청정식수 제공: 급수시설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정수기 설치 시 여과 필터 정기적 교환 및 청결 관리

사.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 금지: 학원등록증에 표시된 일시 수용능력 인원 범위에 맞게 수강생 수용(위반 시 초과 정도 및 횟수에 따라 별점 부과)

아. 거짓·과대 광고 금지(홍보가 실제 운영과 다르거나 과대 포장된 경우)

- (1) 활동하지 않는 강사, 개설하지 않은 교습과정, 강사경력 및 학력 허위 홍보
- (2) 최대·최고 등 검증할 수 없는 **절대적 표현 사용**
- (3) 프랜차이즈 학원의 특목고 입학생 수 부풀리기(타 가맹학원 실적 활용)
- (4) 거짓·과대가 의심되는 **광고물 일체**(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모두 포함)

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22:00이며(독서실은 교습시간 연장 신청 가능) 교습시간 무단 연장 위반 시 초과 시간 및 횟수에 따라 별점 20점~등록말소 처분

차. 법에서 정한 기타경비 이외 다른 명목의 경비(교재비 등)는 징수할 수 없음
(기타경비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IV 주요 지도·감독 사항

-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20조(청문), 제23조(과태료)
-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조례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3조(행정처분)
- 교육규칙 제16조(지도·감독), 제21조(처분 기준), 제22조(행정처분 절차 등), 제23조(행정처분 통지), 제24조(행정처분장 게시)

1. 지도·감독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가. 게시사항 미준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 강사인적사항 등

나. 등록 및 통보 사항 미준수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강사채용 및 해임 미등록,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다.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라. 교습비등 초과 징수

마. 교습시간 위반(22:00 이후 교습)

2. 사항별 주요 지적 사례

가. 등록증명서 미게시

- (1) 등록증명서는 사무실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함.
- (2) 등록증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

【사례】

○○학원 설립·운영자는 면허세를 납부한 뒤 교육지원청에 납부영수증을 제시한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학원에 게시해 두어야 함에도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1년 가까이 미게시

나. 원칙 관리

- (1) 학원·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원칙을 위반하여 운영할 수 없음.
- (2) 교육지원청 교부 원칙은 항상 비치해야하며, 분실 또는 변경할 경우 재교부 신청

【사례】

○○음악학원에서는 원칙에 피아노 과목만 등록 후 바이올린, 첼로 등을 교습

- (3)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동시간대 그 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교습 불가

【사례】

○○학원에서는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이 동일하여 원생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수업환경 및 안전을 등한시하고 좁은 강의실에서(일시수용인원: 15명)을 초과하는 27명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습

다. 등록사항 변경

- 교습과정, 교습비등, 위치·시설·설비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변경 등록을 한 후 운영

【사례】

○○교습소를 인수받은 교습자는 인수 시 등록된 시설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지도·감독 당시 시설 변경 미등록 지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수·인계 시 관련 모든 사항은 인수자에게 승계**

【사례】

○○독서실 설립·운영자는 독서실의 위치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위치변경 하여 운영

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무단변경

-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임의계약에 의해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를 변경하여 운영

마. 강사 관리

(1) 강사 채용

- (가) 채용 및 해임 등록: 학원 설립·운영자는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교육지원청으로 등록(채용 시에 구비 서류가 미비 할 경우에는 등록 불가)

【사례】

○○학원 설립·운영자는 강사들의 이직률이 높아 최소 1개월은 지나봐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15일 이내에 채용 미등록

【사례】

○○학원 설립·운영자가 강사 000은 파트타임 강사라며 채용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시정명령) 받음. 학원에서 교습하는 모든 강사는 채용등록 대상(학원장, 계약직, 시간강사 등)

(나) 강사 인적사항 게시: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사례】

○○교습소 교습자는 인적사항을 미게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음.

(2) 자격이 미달되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강사 채용 불가

【사례】

○○학원에서는 겨울방학 기간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반 강좌 개설로 ○○명을 모집하고 강의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강사자격이 없는 대학교 재학생 2명을 채용하여 강의

(3) 어학원에서 E-2비자나 F계열 비자가 아닌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 불가

【사례】

○○어학원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특강을 개설하여 ○○○명의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기존 강사로는 강의를 하기가 어렵게 되자,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없는 관광(B-2) 체류자격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3명을 채용하여 수강생에게 강의

(4) 학원설립·운영자가 강의를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신청

(5) 강사 또는 직원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 결정

바. 교습비

(1) 교습비 반환기준 등 게시물은 학습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사례】

○○학원 설립·운영자 ○○○는 교습비등 게시물을 작성하고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고 원장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방치

(2)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사례】

○○교습소에서는 수강생으로부터 월60,000원~75,000원 교습비를 징수하였지만, 영수증을 수강생에게 미교부하였음.

(3) 수강생에게는 교재 등 어떠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 징수 불가

(4) 교습비 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 금지

【사례】

○○교습소에서는 초등부를 대상으로 영어를 1일 3시간씩 월 100,000원, 중등부는 영어를 1일 2시간씩 월 70,000원으로 받으면서도 교습비등 게시표에는 영어 55,000원(30시간/월)로 게시

【사례】

○○학원에서는 월 60,000원~65,000원의 교습비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이를 게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수강생으로부터 월 80,000원~95,000원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였음.

- (5)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에 반환** (기간 내 미반환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사. 명칭

-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 (2) 유치원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인 외국어를 사용하여 학원 등록 및 광고 금지(「유아교육법」 위반)
- (3) 동일한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다른 학원·교습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아. 시설

- (1)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시설 이외의 장소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
- (2) 학원 설립·운영자가 시설·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변경등록
- (3) 독서실 열람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독서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당초 등록 시 열람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이 없이 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열람실을 사무실로 전용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 열람실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변경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당초 등록 시 열람실로 등록하였다가 이용자가 부족하게 되자 사무실 등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독서실에서는 독서실 운영 중 이용자가 줄어 당초 등록 시 열람실 용도로 등록된 부분을 칸막이 공사를 하여 일부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축소 운영

- (4) 강의실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면적 확대 및 축소, 위치 무단 변경 등)

【사례】

○○학원은 운영 중 강사들이 수업 연구 및 사무 공간 부족을 호소하자 당초 등록 시 강의실 용도로 등록된 부분을 칸막이 설치를 하고, 일부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축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사례】

○○교습소 교습자는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많아지자 당초 신고 시 강의실로 신고된 부분과 휴게실로 신고된 부분을 불법 공사를 하여 하나의 강의실로 확장하였고 계속 사용하면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미신고

- (5) 강의실 면적 기준에 맞춰서 등록하였다가 시설을 임의변경하면서 기준에 미달되도록 한 경우
- (6) 당초 등록 시 강의실(실습실)로 등록하였다가 학원생이 부족하게 되자 사무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1) 입시보습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교습하는 경우
- (2) 어학원에서 중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3) 미술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학 등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 (4) 음악학원이 초등학교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경우

【사례】

○○미술학원에서는 수강생이 적어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자 더 많은 수강생들을 받기 위하여 국어와 영어를 가르침.

- (5) 독서실에서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사례】

○○독서실에서는 열람실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교과과정을 교습한 사실이 있음

- (6) 교습소는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음에도 학원처럼 다수의 과목 강의

※ 교습자가 다수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교습자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강의하게 하는 것도 위반 사항임.

【사례】

○○피아노교습소 교습자는 수강생이 많아져서 혼자 운영이 힘들어지자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처럼 운영

【사례】

교습과목이 음악인 ○○학원에서는 학부모들의 타과목 교습요구가 있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과정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어, 미술, 과학, 국어, 수학과목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습

차. 제장부 및 서류 관리

(1)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사례】

○○학원에서는 수강등록 인원이 적고 학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영수증 원부 미비치

【사례】

○○교습소에서는 사무직원 없이 교습자 혼자 강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수강생대장을 미비치

(2) 제장부를 부실 기재한 경우

【사례】

○○학원에서는 제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었으나 수강생대장에 학원생의 입·퇴원일 미기재, 수강료 영수증 및 영수증 원부에 금액 미기재, 직원명부에 직원채용·해임일 미기재 등 부실 기재하였음.

학원·교습소 장부 및 서류[시행규칙 별표2]

장 부 및 서 류 명	서 식	보존기간
1. 원칙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
5.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6. 수강생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7. 직원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 속

※수강생 출석부는 장부 목록에서 제외되었음(2019. 1. 10. 삭제)

카. 휴·폐원(소)

- 학원·교습소를 1개월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

타. 거짓·과대 광고

- (1)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학원을 ○○유치원·스쿨 등으로 광고

【사례】

○○학원은 프랜차이즈회사 △△스쿨의 교재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하기 위해 “△△스쿨”로 학원명칭을 임의 변경하여 외부간판에 설치·표시하고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 미통보

- (2)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예술원으로 광고

- (3) 학원광고를 하면서 “100% 취업보장”, “100% 합격보장”, “전국 1%이내의 명문학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 현혹

【사례】

○○어학원은 수강생 확보를 위하여 전단지 작성하면서 학원장의 실제 경력(무역학과 졸업, 학원경력 없음)과는 상이하게 ○○대학 동시통역대학원 졸업 및 전 ○○외국어학원 원장으로 허위 기재하여 배포

과. 허위증명 발급

- (1) 교육지원청에 강사채용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학원 직원명부에 등재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근무사실이 있다고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 강사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지급 서류 및 4대 보험 지급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이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행위는 적법함.

3. 행정처분

가. 학원법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별점부과 대상인 “위반사항” 으로 구분하되, 별점은 위반사항 하위에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를 세분화하여 반복 위반 횟수별로 부과

- (1) 별점 부과 시 시정명령 조치
- (2) 합산 별점에 따라 정지(31점~65점), 등록말소(66점이상) 처분
- (3) 별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별점 (점)	31 ~ 35	36 ~ 40	41 ~ 45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이상
행정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4) 행정처분의 적용례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별점 합산**
-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별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별점 부과**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

【예시】

- o 별점은 2년 동안 관리함. 즉, 2년 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적발 차수에 해당하는 별점 부과
- o 영수증 미교부로 적발된 자가 2년 내에 영수증 미교부로 다시 적발되면 2차 적발 별점(40점) 부과
- o 2023. 4. 26.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 즉, 2021. 4. 26.의 다음날인 **2021. 4. 27.부터 2023. 4. 26.까지를 별점 관리기간**으로 함

【예시】

- o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달라도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내 있는 행위를 위반하면 반복횟수별 별점을 적용함
- o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2년 이내)
최초에는 “1시간 초과”, 두 번째는 “1시간 이내 초과”로 적발되었을 경우
- 최초 적발: “1시간 초과” 별점: 35점
- 두번째 적발: “1시간 이내 초과” 별점: **20-40 → 50점**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등록말소 (66)
	2시간 초과 이상	50	등록말소 (66)	

※ 불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형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별점 부과

나. 시정결과 보고

- (1) 행정처분통지서의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결과보고서를 제출
⇒ 증빙자료: 교육지원청 통보서, 사진, 시정자료(서류) 등 입증자료
- (2) 기한 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별점 및 과태료 부과
- (3)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시(출입기파·방해, 서류제출 거부)
⇒ 등록말소(강박행위) 등 별점 및 과태료 부과

V

기타 착안 사항

■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의 죄(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2)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

- 학원설립·운영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7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위반 예시

【예시】

학교교과교습학원인 ○○학원에서 A강사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원조교제 할래?” 등의 발언을 해 학습자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예시】

○○교습소에서 B교습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것을 보조요원이 인지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 아동학대 예방

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나.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

- 학원설립·운영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 예시

【예시】

유아 대상 놀이학원에서 C강사가 말을 듣지 않는 학습자의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예시】

학교교과교습학원인 ○○학원에서 D강사는 학습자의 신체에 멍이 생기고 움직임이 불편해보여 상담한 결과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 등 안전관리

1. 수강생 안전

가. 어린이 학습자 보행 안전 대책

- 교통사고가 어린이 사고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만큼 어린이가 보행할 때는 더욱 안전에 주의.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규칙을 일러주어 안전수칙 준수 습관화

(1) 횡단보도를 건널 때

- 신호등이 있다면 초록불이 켜진 뒤 왼쪽을 보고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건너며, 이때 꼭 손을 들게 하도록 교육
- 녹색 신호가 깜박일 때는 건너가지 말고, 건널 때는 뛰지 않게 하며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도록 함
- 신호등이 없다면 가까운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도록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할 때는 어른을 따라 건너거나 교통 정리하는 사람의 신호를 따르도록 안내

(2) 학원·교습소에 갈 때

-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학원·교습소로 출발해 급하게 뛰는 일이 없도록 안내
- 인도의 안쪽으로 걸도록 하고, 가급적 공사장 등의 위험한 장소가 적은 곳으로 다니도록 하며 뒤돌아보며 걸거나 친구와 장난하며 걷지 않도록 함

(3) 골목길, 주차장을 다닐 때

- 골목에서 차가 다니는 길로 나올 때는 먼저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오지 않는지 앞뒤 좌우를 살피도록 안내
- 주차장에서는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차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차 사이를 뛰어다니지 않도록 교육
- 차가 다니는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자전거 등을 타지 않도록 함

나. 공간별 안전 대책

(1) 창가, 베란다

- 학습자가 유아 또는 어린이일 경우 물건을 꺼내기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기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창틀 위에는 아이들의 시선을 끌 만한 물건들은 올려 놓지 않고, 책상 등의 가구도 창가에서 멀리 배치하며 유아 또는 어린이가 평소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거나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지 않게 주의시킴

(2) 화장실

- 욕실 바닥재로 표면이 미끄러운 타일은 피하고, 욕조의 바닥과 욕실 앞 깔개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깔개를 설치
- 바닥에서 미끄러질 경우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칠 염려가 있으므로 수도꼭지에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것을 권장
- 또한 학습자가 어린이일 경우, 학습자의 키에 비해 세면대가 높은 경우 아이가 받침대를 사용하다 미끄러질 수 있음을 주의

(3)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에게 놀이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밀지 않도록 안내
- 놀이기구는 싸우지 않고 순서대로 사용
- 동물 혹은 물건을 손에 들거나 가방을 메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함

다. 사례에 따른 응급처치

(1) 눈가가 찢어진 경우

- 우선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거나 콘택트렌즈 세척액 같은 것을 깨끗한 솜에 묻혀 씻어낸 후 항생제 연고 종류를 바름
- 상처가 깊거나 찢어진 부위가 길면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는 것이 좋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안했다면 병원에 이야기하여 파상풍 감염에 대한 대비도 하도록 함

(2) 팔이 꺾인 경우

- 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딱딱한 받침판이나 단단한 표지의 책, 또는 신문지를 여러 겹 말아서 단단하게 만들어 부러진 팔을 받쳐주어 부목을 댄 뒤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음
- 널빤지나 딱딱한 물건을 부목으로 사용할 때는 부목 자체를 깨끗한 헝겊 등으로 감싼 뒤 사용
- 시계, 팔찌 등 액세서리는 미리 제거(상처 부위가 부어오른 후에는 잘 빠지지 않음)

(3)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는 것 금지(각막이나 결막 손상 위험)
- 눈물을 나오게 해서 이물질이 흘러나오게 하거나 깨끗한 생리 식염수 혹은 콘택트렌즈 세척액이 있으면 눈에 넣어 씻어내도록 함

(4) 코뼈가 부러진 경우

- 손으로 너무 만지거나 건드리지 않고 병원으로 직행하고, 만약 피가 난다면 지혈을 위해 피가 나는 부위를 압박해 피를 멈추게 하도록 함

(5) 얼굴이 굵힌 경우

- 상처가 깊지 않다면 과산화수소 혹은 끓였다 식힌 물이나 비눗물로 상처를 씻어내 상처부위의 이물질 제거
- 달라붙지 않는 가제나 붕대를 한 겹만 사용해 상처를 덮고 반창고로 고정
- 붕대를 갈려고 할 때 상처에 붕대가 붙었다면 과산화수소수를 적셔서 제거
- 상처 부위가 상당히 넓거나 깊어 소독약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때는 병원으로 직행

(6) 물체에 부딪혀 다리를 다친 경우

-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면서 아파하면 일단 금이 갔거나 부러진 것을 의심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한 뒤 딱딱한 받침판이나 단단한 표지의 책 등 단단한 것으로 상처 부위에 부목을 대고 병원으로 옮기도록 함
- 부목을 상처 부위에 고정시킬 때는 붕대나 손수건, 벨트, 넥타이, 끈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되, 혈액 순환을 차단시킬 정도로 너무 세게 묶지 않도록 함
-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부목 아래로 노출시키도록 하여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색이 변하거나 부어오른다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고정시킨 것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준다.

(7)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

-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도록 하고 진찰을 받은 뒤 돌아와서도 48시간 동안 내에 다음의 현상이 보이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향하도록 함
 -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평상시처럼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 한두 번 이상 구토하거나 구토한 후 몇 시간 사이에 다시 토하기 시작할 경우
 - 한쪽 눈동자가 다른 한쪽보다 커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
 - 팔이나 다리를 예전과 같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할 경우
 - 말소리가 똑똑치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경우
 - 심한 두통을 호소할 경우

-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고 말하거나 양쪽 눈동자가 각기 따로 움직일 경우
- 경련이 일어나거나 깜짝 놀라는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8) 가시에 긁혀 살이 패인 경우

-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바늘과 핀셋을 소독하여(끓는 물에 5분 정도 넣거나, 성냥불·라이터불에 대고 열을 가한 뒤 소독가제나 알코올로 그을음을 닦음) 가시가 박힌 부위의 살갓을 바늘로 약간 헤쳐 놓은 뒤 핀셋으로 가시 제거
- 가시를 빼냈다면 상처 부위를 살갓 눌러 약간의 피가 흐르게 해준 후, 소독약을 바르고 소독붕대로 덮어 보호
- 피가 많이 날 때는 피가 나는 부위를 꼭 눌러서 지혈시키고, 피가 멎고 나면 상처부위를 소독수로 자주 소독해 굼지 않도록 함

(9) 피약별에서 쓰러진 경우

- 피약별에 장시간 있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는 시원한 그늘로 가서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린 자세로 눕혀 쉬게함
- 진정이 되면 시원한 주스 등으로 당분을 보충하거나 소금과 설탕을 물에 조금 타서 먹여 당과 전해질 보충

▣ 유출 관련 주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A교수가 국가고시인 관세사 시험 문제를 특정 학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출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교수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관세 전문학원 대표 B씨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아 관세사 시험에 출제했다. B씨에게서 받은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해 2019년 관세사 시험 2차 '관세평가' 과목 1, 2, 3, 4번 문제에 그대로 내보냈다. A교수는 B씨 학원에서 강의도 하지 않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80여만원의 강의비를 받기도 했다.

- [1] '관세사 시험문제 의혹'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수 등 불구속기소, 2020. 9. 11. 윤원진 기자
- 최근 관세사 시험과 관련하여 학원 운영자와 유착관계가 발생
 - 국가 주관 시험과 관련하여 문제 유출이 발생할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개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학원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함

[별첨 1] 학원·교습소 설립(변경) 시 구비서류

설 립	위치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1. (, 교육지원청 비치)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3. 소방점검완비증명(해당건물) 4. 학원의 시설평면도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지참 (등록기준지 확인)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임원 등록기준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수임자 신분증)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7. 건물사용증명서류(타인 소유 시) -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 8. 건물무상사용 시 - 무상사용승낙서 (건물주 인감도장 날인) - 건물주 인감증명서	1. 신청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3. 소방점검완비증명(해당건물) 4. 학원의 시설평면도 5. 건물사용증명서류(타인 소유 시) -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 6. 건물무상사용 시 - 무상사용승낙서 (건물주 인감도장 날인) 7. 기존 등록증명서	1. 신청서 (인계자 인감도장 날인) 2. 건물사용증명서류(타인 소유 시) -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 3. 건물무상사용 시 - 무상사용승낙서 (건물주 인감도장 날인) 4.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수인계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사본(원본지참)] 5. 기존 등록증명서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지참(등록기준지 확인)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임원 등록기준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수임자 신분증)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명칭 변경	원칙 변경	교습과정 변경
1. 신청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2. 기존 등록증명서	1. 신청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2. 기존 등록증명서 3. 원칙신구대조표	1. 신청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2. 기존 등록증명서 3. 기타 서류
시설 변경	휴 원	폐 원
1. 신청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2. 평면도 3. 기존 등록증명서 (일시수용인원 변경시)	1. 신고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1. 신고서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비치, 신분증 지참) 2. 기존 등록증명서

[별첨 2]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점 (점)	31 ~ 35	36 ~ 40	41 ~ 45	46 ~ 50	51 ~ 55	56 ~ 60	61 ~ 65	66 이상
행정처분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으로 한다.
- ※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
 - 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
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

발일까지로 한다.

- 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5.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벌점표(제16조 및 제21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		
제2호	숙박시설 기준 미달	숙박시설 기준 미달		35	등록말소	
제3호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25	50	등록말소
		설비(교구 포함) 기준 미달		10	20	30
제4호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 시 등록말소		
제5호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 시 등록말소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변경 미등록		10	15	20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등록말소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20	40	6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15	20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5	50	등록말소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35	등록말소	
제7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등록말소	
			50% 이상 100% 미만	40	50	등록말소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제8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등록말소	
제8호 의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을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제9호	거짓·과대 광고	거짓		35	등록말소	
		과대		20	40	등록말소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10	20	3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10호		미게시·거짓 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고지 위반	교습비등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으로 고지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등록말소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50	등록말소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50	등록말소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	거짓으로 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등록말소
		2시간 초과 이상	50	등록말소	
	원칙 세부내용 위반	기 타	5	10	15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20	40	60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 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5	10	15
	등록증명서 게시 위반	등록증명서 미게시	10	20	30
	등록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10	20	30
	폐원 미신고	폐원 미신고	폐원 신고 촉구 후 불이행 시 등록말소		
	같은 시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초과·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 ~ 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제10호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등록말소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기준미달	20	40	60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등록말소										
		출입기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등록말소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등록말소)	등록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말소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보고(제출)	35	50	등록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등록말소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과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35	등록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11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등록말소										
제12호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2호의 아동학대 행위	등록말소										
1. “구분”은 위반사항이 해당하는 법 제17조제1항의 해당 “호”를 말함 2.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함 3.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을 부과함 4. 4차 이후의 “반복횟수별 벌점”은 다음과 같음 <table><tr><td>4차</td><td>5차</td><td>6차</td><td>7차</td></tr><tr><td>3차시 벌점×2</td><td>3차시 벌점×3</td><td>3차시 벌점×4</td><td>3차시 벌점×5</td></tr></table>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제2호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폐지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 변경 미신고	30	60	폐지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10	15	2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10	15	20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폐지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폐지
			50% 이상 100% 미만	40	50
			30% 이상 50% 미만	20	40
제4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폐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폐지	
제4호의 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사용 (교습소를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명칭표기 위반	10	20	30
제5호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거짓 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 (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고지 위반	교습비등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으로 고지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폐지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폐지
		2시간 초과 이상	50	폐지	
	환경 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5	10	15
	신고증명서 게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 표시	10	20	30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5호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1개월 이상 휴소 미신고	1개월 이상 휴소 미신고	10	20	30
	폐소 미신고	폐소 미신고	폐소 신고 촉구 후 불이행 시 폐지		
	같은 시간에 해당시설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초과	100% 이상	20	40	60
		50% 이상 ~ 100% 미만	10	20	30
		50% 미만	5	10	15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사항	미가입	30	60	폐지
		기준미달	20	40	60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폐지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폐지	
	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 명령 불이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일이 91일이 이상인 경우는 폐지)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폐지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보고(제출)	35	50	폐지
		미보고(제출)	15	30	45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 거	40	50	폐지
		기 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30	60	폐지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교의·중과실·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교습소 시설이용 불법과외, 교습소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35	폐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교의·중대·중과실	30	60	폐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6호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폐지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7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폐지		
1. “구분”은 위반사항이 해당하는 법 제17조제2항의 해당 “호”를 말함 2.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면 이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함 3.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을 부과함 4. 4차 이후의 “반복횟수별 벌점”은 다음과 같음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의교습자)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제2호	위치 무단 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다른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60	중지 1년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10	15	20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중지 1년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계사·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중지 1년
			50% 이상 100% 미만	40	중지 1년
			30% 이상 50% 미만	20	40
			30% 미만	10	30
제4호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중지 1년	중지 1년
제5호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표시 위반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거짓 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 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고지 위반	교습비등 서면고지 요구 불응 또는 거짓 고지	10	20	30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중지 1년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교습시간 위반	1시간 이내 초과	20	40	60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초과	35	50	중지 1년
		2시간 초과 이상	50	중지 1년	중지 1년
	신고증명서 게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미표시·거짓표시	10	20	30
		광고시 신고증명서 내용 부분표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중지 1년	중지 1년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제5호	중지 명령 불이행	중지 명령 불이행	중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과외교습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중지 1년
	신고증명서 제시 위반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의교습자의 과외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10	20	30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보고(제출)	35	50	중지 1년
		미보고(제출)	15	30	45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30	60	중지 1년
	개인과의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개인과의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30	60	중지 1년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35	중지 1년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6호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3항제6호의 아동학대 행위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1. “구분”은 위반사항이 해당하는 법 제17조제3항의 해당 “호”를 말함 2. 개인과의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벌점표에 의해 벌점을 부과함 3.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동일한 행태의 행위로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에 한하여 반복횟수별 벌점을 부과함 4. 4차 이후의 “반복횟수별 벌점”은 다음과 같음(단, 3차시가 “중지1년”인 경우 4차 이후는 모두 “중지 1년”으로 함)					
		4차	5차	6차	7차
		3차시 벌점×2	3차시 벌점×3	3차시 벌점×4	3차시 벌점×5

[별첨 4]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제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	법 제23조제	50	100	200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항제5호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별첨 5] 교습비등 게시기준

표시사항	표시기준
가. 교습과정 (교습과목) / 반당 정원	○ (학원)교습과정은 다음 사항이 구분, 명시되어야 한다. - 교습과정의 수강 반, 교습과목, 수강대상(학년), 교습강사 - 반당 정원 ○ 독서실
나. 교습시간	○ 교습시간은 월 교습비에 따른 월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교습시간(실제 수업시간을 단위위로 합산)=1회 수업 분×교시 - 1월 교습시간 = 1일 교습시간 × 교습일수 ○ 월 교습비에 따른 월 교습시간 기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회 교습시간: 분 단위로 표시 - 교습비 징수단위 총 교습시간 = 1회 교습시간 × 교습 횟수 ○ 교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함. ○ (독서실)이용시간은 월 이용료에 따른 월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일 이용료 - 월 이용자가 중간에 이용을 그만두는 경우의 반환기준
다. 교습비	○ (학원)교습비는 실제 징수 교습비를 표시하여야 하며,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의 세부기준이 상이할 경우 그 모두를 표시한다. ○ (독서실)월별 이용료는 실제 징수 이용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만 실제로 인정한다. -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교습비 표시 예시

					교습시간	교습비 (단위:원)	기타정비 (단위: 원)	
수강반	교습과목	정원 (반당)	수강대상	강사			구분	금액
영수 중급	영 · 수		중2 중3	000	일 교습: 1회50분*2교시 월 교습: 일100분*10일	90,000	모의고사비	20,000
				000	일 교습: 1회50분*2교시 월 교습: 일100분*12일	110,000		
과고 대비반	국, 영, 수, 과		중3	000,000, 000,000	일 교습:1회50분*4교시 월 교습: 일200분*20일	350,000	재료비	50,000
독서실	열람					120,000		

[별첨 6] 학원강사·교습자 자격기준

	자격기준
학 교 교 과 교 습 학 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

구분	자격기준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 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한 강사 자격기준

계열	교습과정	인정 기준	비 고
기예	바둑	1.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 (사)한국바둑협회가 발행한 바둑 아마 3단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 (사)한국바둑협회가 발행한 바둑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향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격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아마 3단 이상 보유자로 인정 [평생학습진흥과-743(2010.01.22.)]	바둑관련 법인 및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3개 법인만 인정
경영·관리사무	주산	주산 1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과-743(2010.04.23.)]	주산관련 민간자격 중에서 교육부 공인 받는 경우 제4호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추가인정 검토 필요

[별첨 7] 학원 교습과정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무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옹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첨 8]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학원 체크리스트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여부		
3	위 치	○ 위치 무단 변경여부		
4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여부 ○ 교습비등 게시여부(내/외부)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여부 ○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 교습비등 게시표 ○ 시간표 ○ 신용카드 전표	○ 교 습 비 등 과 그 반 환 에 관 한 사 항 미 게시는 과태료 대상(최대 200만 원 이하)
5	강 사	○ 강사인적사항 게시 여부 ○ 강사 채용, 해임 변경 등록 여부 ○ 무자격 강사 채용 여부 ○ 외국인 강사 자격 검증 여부 ○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 여부	○ 강사 현황	○ 강사 인적사항 미게 시 및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은 과태 료 대상 (최대 300 만원 이하)
6	직 원	○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 여부		○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 (최 대 500만원 이하)
7	교습과정	○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여부		
8	학원운영	○ 등록증명서 게시 여부 ○ 22:00 이후 교습여부 ○ 제장부 비치여부 ○ 영수증 발급 여부 ○ 운영관련 부조리 ○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 허위 과대광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 수납지출 증빙철 ○ 수강생대장 ○ 영수증원부 ○ 보험증권 ○ 각종 게시물	○ 등록증명서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보 험 미가입(금액부족 등), 영수증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원 이하)
9	기 타	○ 시설변경여부 ○ 학원원칙 준수 여부		

■ 독서실 체크리스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 립 운 영 자 변경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여부		
3	위 치	◦ 위치 무단 변경여부		
4	이용료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여부 ◦ 교습비등 게시여부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여부 ◦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 이용료등 게시표 ◦ 시간표 ◦ 신용카드 전표	◦ 교 습 비 등 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최대 200만원 이하)
5	직 원	◦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여부		◦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여부		
7	독서실운영	◦ 등록증 비치여부 ◦ 22:00 이후 교습여부(열람 연장 시 제외) ◦ 제장부 비치여부 ◦ 운영관련 부조리 ◦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 허위 과대광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 수업지출 증빙철 ◦ 영수증원부 ◦ 보험증권	◦ 보험 미가입(금액부족 등)은 과태료 대상 (최대300만원이하)
8	기 타	◦ 시설변경여부 ◦ 독서실원칙 준수 여부		

■ 교습소 체크리스트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 신고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교습자변경	◦ 교습자 무단변경 여부		
3	위 치	◦ 위치 무단 변경여부		
4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여부 ◦ 교습비등 게시여부 ◦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여부 ◦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 교습비등 게시표, ◦ 시간표 ◦ 신용카드 전표	◦ 교 습 비 등 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최대 200만원 이하)
5	보조요원	◦ 교습 여부 ◦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 여부		◦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 신고한 교습과목 준수여부		
7	운영관련	◦ 신고증 비치여부 ◦ 강사 채용 여부 ◦ 22:00 이후 교습여부 ◦ 제장부 비치여부 ◦ 운영관련 부조리 ◦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 허위 과대광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부적정	◦ 수강생대장 ◦ 영수증원부 ◦ 보험증권	◦ 보험 미가입(금액부족 등)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원 이하)
8	기 타	◦ 시설변경여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교육가족답게 살겠습니다』 공통원칙 및 3대 행동수칙

□ 공통원칙

- 새로운 청렴교육문화를 선도하는 서울교육가족답게 살겠습니다

□ 교원 3대 행동수칙

- ‘스승 존경’ 이 ‘청렴’ 으로부터 시작됨을 선언하며 ‘나’ 부터 실천하겠습니다
- 모든 아이들을 차별이나 편견없이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촌지나 향응도 받지 않겠습니다

□ 일반직 3대 행동수칙

- 청렴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을 숙선수범하여 지키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나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학부모 3대 행동수칙

- 모든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를 찾아가겠습니다
- 학교를 믿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 *5대 청렴문화 캠페인

-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 인사철에 축하선물(떡·화분 등) 하지 않기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하고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